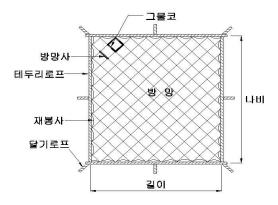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

C - 31 - 2017

- (마) "재봉사(絲)"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(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)을 말한다.
- (바) "달기 로프"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 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구조 및 재료

- (1)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(KS F 8082)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"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"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<그림 1>과 같이 방망, 테두리로프, 달기로프, 재봉사로 구성된다. 다만,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



<그림 1> 추락방호망의 구성(예시)

- (가) 그물코 :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(매듭의 중심간 거리)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.
- (나) 테두리로프: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한다.